

## 투자설명서 주요 변경사항

효력발생일 : 2019년 01월 11일

▶ 투자신탁명:

피델리티 EMEA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피델리티 아세안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주요변경내용:

-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위험등급 정보 업데이트
- 기재 수정 등

▶ 변경내용:

피델리티 EMEA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요약정보	정보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내용 기재	<b>(업데이트)</b>  *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되는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신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전반	용어 통일	피투자펀드 등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
<b>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b>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정보 업데이트	운용현황 등	<b>(업데이트)</b>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정보 업데이트	관련 국가 현황 등	<b>(업데이트)</b>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정보 업데이트	위험등급 산출을 위한 연환산 표준편차	<b>(업데이트)</b>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정보 업데이트	정보 전반	<b>(업데이트)</b>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기재 명확화	<b>[총보수 및 비용]</b> 표에 대한 주석  ※ 기타비용은 증권사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정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상기 작성기준일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기타비용 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되었습니다.	<b>[총보수 및 비용]</b> 표에 대한 주석  ※ 기타비용은 증권사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정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상기 작성기준일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기타비용 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되었습니다.  <b>다만, 종류형의 경우,</b>

피델리티 EMEA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p>(…)</p> <p>※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p> <p>※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 및 기타비용을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한 값의 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값과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p> <p>※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된 추정치들(즉,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기타비용, 피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비율)은 각기 다른 대상기간의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위 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u>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기타비용을 투자비율대로 안분한 값과 각 종류(클래스) 단위에서 발생하는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u></p> <p>(…)</p> <p>※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u>각 종류(클래스) 단위에서 발생한</u>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p> <p>※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 및 기타비용을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한 값의 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값과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 <u>집합투자기구의</u> 총보수·비용 비율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p> <p>※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된 추정치들(즉,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기타비용, 피투자 <u>집합투자기구의</u> 총보수·비용 비율)은 각기 다른 대상기간의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위 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2) 모투자신탁에 부과되	기재 명확화	<p>[모투자신탁의 총보수 및 비용] 표에 대한 주석</p> <p>피델리티 EMEA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p> <p>(…)</p> <p>※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 보수·비용 비율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신탁의</p>	<p>[모투자신탁의 총보수 및 비용] 표에 대한 주석</p> <p>피델리티 EMEA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p> <p>(…)</p> <p>※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 보수·비용 비율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p>

피델리티 EMEA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는 보수 및 비용		<p>총보수·비용 비율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p> <p>※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된 추정치들(즉, 이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피투자펀드의 총보수·비용 비율)은 각기 다른 대상기간의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위 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b>집합투자기구의</b> 총보수·비용 비율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p> <p>※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된 추정치들(즉, 이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피투자 <b>집합투자기구의</b> 총보수·비용 비율)은 각기 다른 대상기간의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위 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b>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b>			
1. 재무정보	정보 업데이트	정보 전반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b>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b>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정보 업데이트	요약 재무내용 등	(업데이트)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정보 업데이트	운용자산 규모 등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 규모			

※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내용:

-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위험등급 변경 및 위험 등급 정보 업데이트
- 관련 투자신탁 변경 반영 (법령 반영 등)
- 기재 수정 등

▶ 변경내용:

피델리티 아세안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요약정보	정보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내용 기재	(업데이트)  *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되는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신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전반	용어 통일	피투자펀드 등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
<b>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b>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정보 업데이트	운용현황 등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마. 재간접형 구조	정보 업데이트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등	(업데이트)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2) 모투자신탁	관련 투자신탁 변경 반영 (법령 반영 등)	<b>피델리티 아세안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b>  (가) 라. 위 본문 (i)과 관련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마. 위 본문 (ii)와 관련하여, <u>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u>	<b>피델리티 아세안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b>  (가) 라. 위 본문 (i)과 관련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별 <u>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u> )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삭제)

피델리티 아세안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정보 업데이트	관련 국가 현황 등	(업데이트)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위험등급 변경	위험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위험등급: 4등급 (보통위험)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정보 업데이트	위험등급 산출을 위한 연환산 표준편차	(업데이트)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기재 명확화	[총보수 및 비용] 표에 대한 주식  ※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상기 작성기준일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기타비용 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되었습니다.  (...) ※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총보수 및 비용] 표에 대한 주식  ※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상기 작성기준일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기타비용 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만, 종류형의 경우,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기타비용을 투자비율대로 안분한 값과 각 종류(클래스) 단위에서 발생하는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각 종류(클래스)

피델리티 아세안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u>단위에서 발생한</u>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 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정보 업데이트	정보 전반	<u>(업데이트)</u>
<b>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b>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 의 운용실적	정보 업데이트	정보 전반	<u>(업데이트)</u>
<b>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b>			
1. 집합투자업자 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정보 업데이트	요약 재무내용 등	<u>(업데이트)</u>
1. 집합투자업자 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정보 업데이트	운용자산 규모 등	<u>(업데이트)</u>

※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 주요 변경사항

효력발생일 : 2019 년 1 월 11 일

▶ 투자신탁명:

피델리티 EMEA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피델리티 아세안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 **주요변경내용:**
- 위험등급 정보 등 정보 업데이트
  - 기재 수정 등

▶ **변경내용:**

피델리티 EMEA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항 목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b>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b>			
보수 비용 등	정보 업데이트 기재 명확화	<p>보수 비용 정보 등</p> <p>[총보수 및 비용] 표에 대한 주석</p> <p>(...)</p> <p>※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상기 작성기준일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기타비용 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되었습니다.</p> <p>(...)</p> <p>※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p> <p>(...)</p> <p>※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 및 기타비용을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한 값의 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값과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p>	<p><b>(업데이트)</b></p> <p>[총보수 및 비용] 표에 대한 주석</p> <p>(...)</p> <p>※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상기 작성기준일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기타비용 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되었습니다. <u>다만, 종류형의 경우,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기타비용을 투자비율대로 안분한 값과 각 종류(클래스) 단위에서 발생하는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u></p> <p>(...)</p> <p>※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u>각 종류(클래스) 단위에서 발생한</u>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p> <p>※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 및 기타비용을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한 값의 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값과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 <b>집합투자기구</b>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p> <p>※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p>

피델리티 EMEA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항 목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된 추정치들(즉,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기타비용, 피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비율)은 각기 다른 대상기간의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위 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총보수·비용 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된 추정치들(즉,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기타비용, 피투자 <b>집합투자기구</b> 의 총보수·비용 비율)은 각기 다른 대상기간의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위 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b>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b>			
(1) 투자전략 4. 운용전문인력	정보 업데이트	운용 현황 등	(업데이트)
(1) 투자전략 5. 투자실적 추이	정보 업데이트	연도별 수익률 추이	(업데이트)
(2) 주요 투자위험및 위험관리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정보 업데이트	위험등급 산출을 위한 연환산 표준편차	(업데이트)
(2) 주요 투자위험및 위험관리 3. 위험관리 나. 환위험 관리 전략	용어 통일	피투자펀드 등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
<b>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b>			
(4) 매입관련 유의사항	과도한 매매의 제한에 대한 유의 문구 추가	-	(추가) (4) 매입관련 유의사항  과도한 매매의 제한: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를 목표로 설정 및 운용되며 과도한 매매를 지양합니다. 투자재산에 대한 단기매매 또는 과도한 매매는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전략을 방해하고 운용 비용을 증가시켜 투자신탁의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시차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자, 또는 당해 투자자가 단기매매나 과도한 매매 패턴을 보이거나 이 투자신탁의 운용에 방해가

피델리티 EMEA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항 목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되거나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투자자들의 수익권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90일미만 동안 보유하는 거래는 과도한 매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투자업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요청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과도한 매매를 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해 투자자의 거래내역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예에 불과하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단기매매 또는 과도한 매매를 하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이 투자신탁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거래내역 및 공동으로 관리되는 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내용:**

- 위험등급 변경 및 위험등급 정보 업데이트
- 정보 업데이트
- 기재 수정 등

▶ **변경내용:**

피델리티 아세안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표제부	위험등급 변경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4등급 (보통 위험)  ※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b>			
보수 비용 등	정보 업데이트  기재 명확화	보수 비용 정보 등  [총보수 및 비용] 표에 대한 주식  (...)  ※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정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상기 작성기준일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기타비용 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되었습니다.  (...)  ※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업데이트)  [총보수 및 비용] 표에 대한 주식  (...)  ※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정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상기 작성기준일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기타비용 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되었습니다. <u>다만, 종류형의 경우,</u> <u>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u> <u>기타비용을 투자비율대로</u> <u>안분한 값과 각</u> <u>종류(클래스) 단위에서</u> <u>발생하는 기타비용을</u> <u>합산하여 산출합니다.</u>  (...)  ※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u>각 종류(클래스)</u> <u>단위에서 발생한</u>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b>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b>			
(1) 투자전략	정보 업데이트	운용 현황 등	(업데이트)
4. 운용전문인력			
(1) 투자전략	정보 업데이트	연도별 수익률 추이	(업데이트)

피델리티 아세안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5. 투자실적 추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위험등급 변경	위험등급: <u>3등급 (다소 높은 위험)</u>	위험등급: <u>4등급 (보통 위험)</u>  ※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정보 업데이트	위험등급 산출을 위한 연환산 표준편차	<u>(업데이트)</u>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3. 위험관리 나. 환위험 관리 전략	용어 통일	<u>피투자펀드 등</u>	<u>외국 집합투자기구 등</u>
<b>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b>			
(4) 매입관련 유의사항	과도한 매매의 제한에 대한 유의 문구 추가	-	<u>(추가)</u> <u>(4) 매입관련 유의사항</u>  <u>과도한 매매의 제한: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를 목표로 설정 및 운용되며 과도한 매매를 지양합니다. 투자재산에 대한 단기매매 또는 과도한 매매는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전략을 방해하고 운용 비용을 증가시켜 투자신탁의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시차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자, 또는 당해 투자자가 단기매매나 과도한 매매 패턴을 보이거나 이 투자신탁의 운용에 방해가 되거나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투자자들의 수익권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90일미만 동안 보유하는 거래는 과도한 매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투자업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요청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과도한 매매를 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해 투자자의 거래내역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예에 불과하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u>

피델리티 아세안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투자자가 단기매매 또는 과도한 매매를 하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이 투자신탁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거래내역 및 공동으로 관리되는 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